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196
--------	--------	-----

제출년월일 : .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 안 이 유

'96년 11월부터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거부 움직임이 있어 이에 따른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를 정상적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관련조례상의 봉투 해당조항에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 를 신설 규정하고, 아울러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와 제작사양에 대한 사항을 신설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 요 골 자

가. 쓰레기봉투 종류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신설삽입 (안 제6조)

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신설삽입 (안 제6조 별표 3)

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사양 신설 (안 제7조 별표 4)

☐ 개정조례(안) : 별 첨

☐ 신구조문대비표 : 불 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불 임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

☐ 관련사업계획서 : 해 당 없 음

☐ 예산수반사항 : 별 첨

☐ 사전예고결과 : 해 당 없 음

☐ 기타참고사항 : 해 당 없 음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일반용봉투' 를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로 하고, '사업장쓰레기를'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를' 을 삽입하며, 동조 제2항중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을 삽입한다.

제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동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중 '일반용봉투' 를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로 한다.

(별표 3)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제6조관련)

구 분	봉투용량 (ℓ)	봉투규격 (가로×세로, cm)	호 칭 두 께 (mm)	
			저 밀도	고 밀도
일 반 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5	26 × 46.5	0.025	0.020
공 공 용 일 반 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10	33 × 56.5	0.025	0.020
공 공 용 일 반 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20	42 × 69.5	0.030	0.025
일 반 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30	48 × 78.5	0.030	0.030
공 공 용 일 반 용	50	56 × 91.5	0.040	0.035
일 반 용	75	65 × 103.5	0.045	0.040
공 공 용 일 반 용	100	71 × 113.5	0.050	0.045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앞면문구)

점선 위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 마 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1)
- 일 반 용 -

-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배출해야만 수거합니다.
-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배출처	배출요령
가정	○ 음식물쓰레기를 선별하여 이물질 제거 (병뚜껑, 비닐조각등)
	○ 개수대에서 1차 침출수 제거 (2시간 이상)
	○ 건조용기에서 2차 침출수 제거 (1일 이상)
	○ 소각가능토록 건조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묶어 배출
음식업소	○ 음식물쓰레기를 선별하여 이물질 제거 (병뚜껑, 비닐조각등)
	○ 건조용기에 담아 침출수 제거 (1일 이상)
	○ 소각가능토록 건조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묶어 배출

○

과 주 시

○

품질인증표시

재질분류표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6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제6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제6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 - - -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 - - - - 사업장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를 - - - - -			봉투의 종류 및 배출내용 규정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② - - - - -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 - - - -			봉투의 색깔규정
제7조 (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 - - (생략)	제7조 (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 - - (생략)	제7조 (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봉투판매인(이하 '봉투	제8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봉투판매인(이하 '봉투	제8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 - - - -			봉투의 종류규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 (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u>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등</u>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수수료의 감면) ①			봉투의 종류규정
1. — 2. (생략)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u>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봉투의 종류규정
제16조 (쓰레기봉투의 매수) ①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u>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u> 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봉투의 종류규정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정			
쓰레기봉투의 용량 · 크기 및 두께 (제6조 관련)				쓰레기봉투의 용량 · 크기 및 두께 (제6조 관련)			
구	분	봉	투	구	분	봉	투
용	용	용량 (ℓ)	규격 (가로 × 세로, cm)	용	용	용량 (ℓ)	규격 (가로 × 세로, cm)
일	반	5	26 × 31	일	반	5	26 × 46.5
공	공	10	33 × 40	음	음	10	33 × 56.5
일	반	20	41 × 49	음	음	20	42 × 69.5
공	공	30	45 × 58	음	음	30	48 × 78.5
일	반	50	56 × 67	공	공	50	56 × 91.5
공	공	75	65 × 78	일	일	75	65 × 103.5
일	반	100	71 × 85	공	공	100	71 × 113.5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청	청	청	청	청	청	청	청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께	께	께	께	께	께	께	께
0.020	0.020	0.020	0.020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5	0.035	0.035	0.035
0.040	0.040	0.040	0.040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0.050	0.050	0.050	0.050

신 · 구 조 문 대 비

(별표 4)	개 정 안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앞면문구) 점심 위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 마 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ℓ) - 일 반 용 - ☐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배출해야만 수거합니다. ☐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지정된 날짜에 넣어 놓읍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

배 출 처	배	출	요	량
가 정	☐ 음식물쓰레기를 선별하여 이물질 제거 (병뚜껑, 비닐조각등)			
	☐ 게수대에서 1차 침출수 제거 (2시간 이상)			
	☐ 진조용기에서 2차 침출수 제거 (1일 이상)			
	☐ 소각가능토록 건조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묶어 배출			
음 식 업 소	☐ 음식물쓰레기를 선별하여 이물질 제거 (병뚜껑, 비닐조각등)			
	☐ 진조용기에 담아 침출수 제거 (1일이상)			
	☐ 소각가능토록 건조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묶어 배출			

예 산 수 반 사 항

□ 사 업 명 : 쓰레기 관급규격봉투 제작

□ 사 업 비 : 237,750 천원

□ 산출 기초

$$○ 5 \ell : 15 \text{ 원} \times 350,000 \text{ 개} = 5,250,000 \text{ 원}$$

○ 10ℓ : 20원 × 2,000,000매 = 40,000,000원

$$\bigcirc \quad 20\ell : 30 \text{ 원} \times 2,300,000 \text{ 개} = 69,000,000 \text{ 원}$$
$$\bigcirc \quad 30\ell : 40\text{원} \times 500,000 \text{ 매} = 20,000,000 \text{ 원}$$
$$\bigcirc \quad 50 \text{ l} : 60 \text{ 원} \times 900,000 \text{ 매} = 54,000,000 \text{ 원}$$
$$\bigcirc 75\ell : 85\text{원} \times 300,000 \text{ 패} = 25,500,000 \text{ 원}$$
$$○ 100 \ell : 120 \text{ 원} \times 200,000 \text{ 대} = 24,000,000 \text{ 원}$$

□ 예산과목	장)	(2000)	사회개발	관)	(2200)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2220)	환경관리	세항)	(2222)	청소관리
	세세항)	(100)	경상예산	목)	(201)	일반운영비
		(01)	일반수용비			